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0.

발 의 자 : 김용태 · 서천호 · 김승수
이성권 · 김대식 · 김성원
진종오 · 고동진 · 배준영
조은희 · 조지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국가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,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자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한국자료실의 설치,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,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·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도서관 보급과 한국자료실 설치·

운영,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증진하고 해외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3조).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 제목 중 “도서관”을 “도서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국가는 국제개발협력”을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 및 한국문화의 확산”으로, “보급에”를 “보급 및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·운영 지원,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3조(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)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53조(도서관 등의 해외 보급 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국제개발협력 및 한국문화 의 확산----- -----보급 및 해외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·운영 지원,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 하고, 이에----- -----.</p> <p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 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